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2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6월 26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청년의무고용 비율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되어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바, 이러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 목표비율을 5% 이상으로 상향하되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고용하여야 한다.”를 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고용하여야 한다.”를 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<u>고용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	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<u>고용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	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<u>고용</u>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4”를 “5”로 하고, “고용하여야 한다.”를 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적”을 “실적 및 계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<u>고용하여야 한다</u>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,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<u>실적</u>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<u>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</u>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,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<u>실적 및 계획</u>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